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 731-6742 /전송번호 31-6745  
 처리부서 : 도시계획과(시청본관2층) 담당 : 박충제

문서번호 도시 58410-1454

시행일자 1995. 11. 24

(제 1 안 )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국 장
보존		11.23.1
도시계획국장	전결	
도시계획과장	박충제	법무담당관 심사필
종합계획계장	박충제	지역계획계장
기안	박충제	협조

제목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고시

1. '95년 제8차('95.11.14)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결정된 마포구 합정동 414일대(합정지구중심)외 4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지정 고시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첨부 : 1. 고시(안) 1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도면 각 1부. 끝.

(제 2 안)

수신 : 건설교통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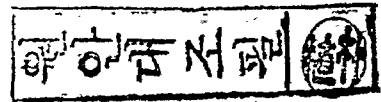
참조 : 수신처 참조

제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보고

1.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도면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토지정책과장

(제 3 안)

수신 : 총무처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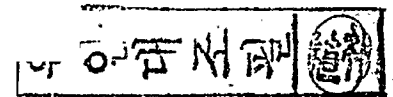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다.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 공보담당관

제목 : 시보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다. 근거법규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끝.

## 도시계획과장

(제 5 안)

수신 : 마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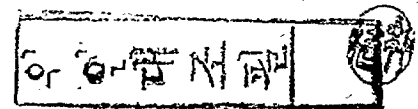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통보

1. 마포구 도정 58412-873('95.6.29)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요청한 합정동 414번지 일대 합정지구중심외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도시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고시문 사본을 귀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하시고,
3. 같은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조속 이행토록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라며,
4. 특히 성산동 589번지 유통상업지역은 당초 일반상업지역 지정시 자동차 정비업소 이전용지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토지이용확인서 표시등)하고 타시설용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조건이 변경된 것은 아님을 통보하니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도면 각 1부.끝.



(제 6 안)

수신 : 강남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통보

1. 강남구 도정 58412-1662('95.6.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위대호로 요청한 청담동 47일대 청담생활권중심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고시문사본을 귀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도록 하시고,

3. 같은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를 조속 이행토록하여 도시계획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도면 1부. 끝.

## 서울특별시

(제 7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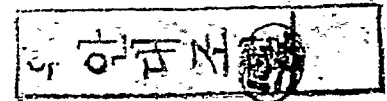
수신 : 수신처 참조

제목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통보

1.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사항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고시문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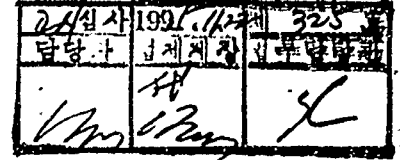
2.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도면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수신처 : 시설계획과장, 재개발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주택개량과장, 도로계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주차계획담당관, 하수처리과장, 도시경관과장

# 고 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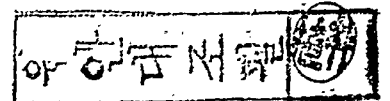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 호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

1.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을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5년 11월 24 일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조서

순번	위 치	면 적 (㎡)	용도지역 변경내역		용도지구 및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1	마포구 합정동	51,400	일반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	합정지구 중 심
	414, 416일대	3,600	준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2	마포구 성산동	54,000	일반상업 지 역	유통상업 지 역	-	성산자동차 정비단지 (자동차정비 용도에 한함)
3	강남구 청담동	44,300	일반주거 지 역	준주거 지 역	도시설계 지 44,300㎡	청담생활권 중 심
4	강남구 대치동	44,200	일반주거 지 역	준주거 지 역	도시설계 지 44,200㎡	대치생활권 중 심
5	강남구 개포동	16,700	일반주거 지 역	준주거 지 역	도시설계 지 16,700㎡	개포생활권 중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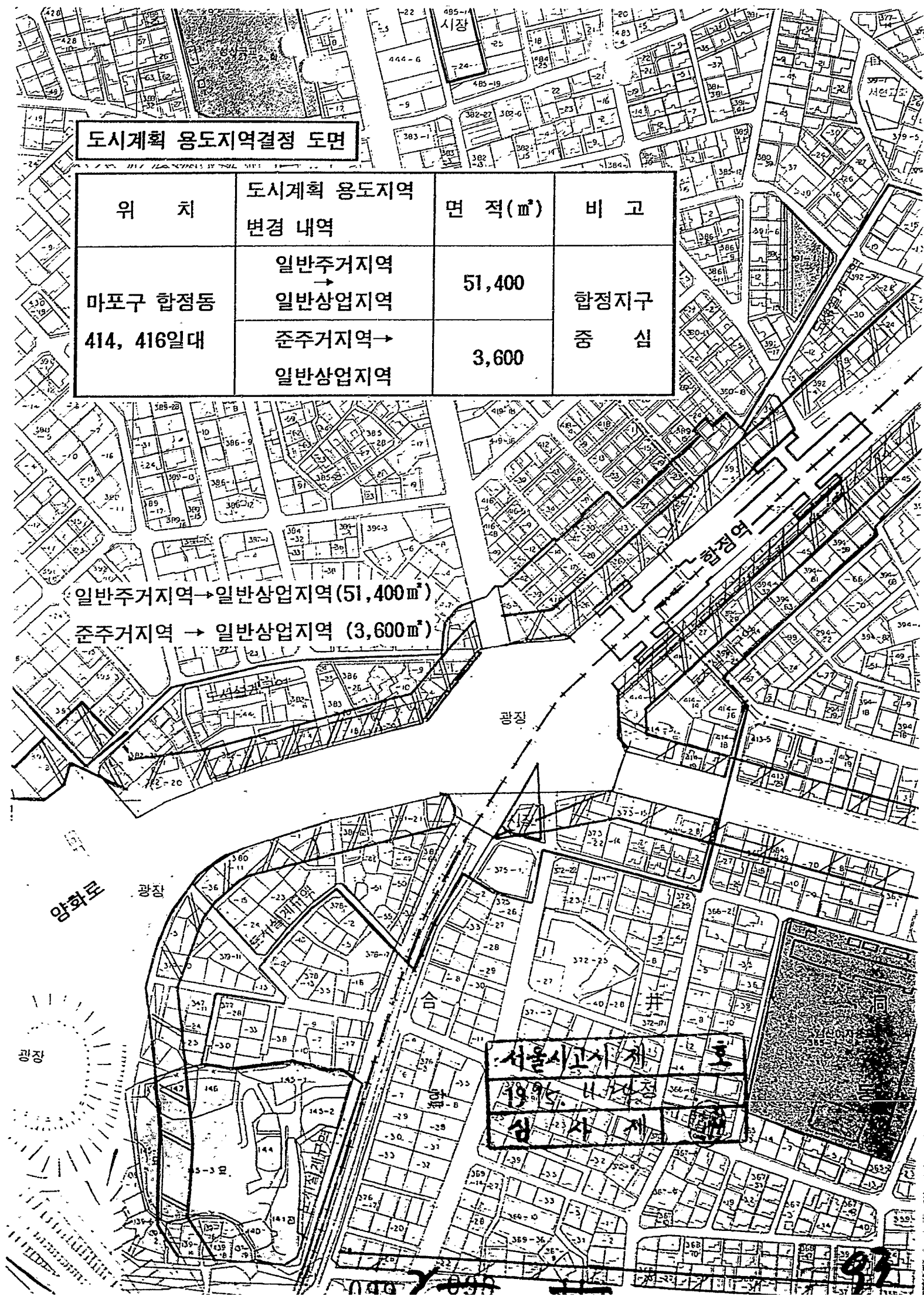
나. 도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마포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및 강남구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도면**

위 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	면 적(㎡)	비 고
마포구 합정동 414, 416일대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51,400	합정지구 중 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600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51,400㎡)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600㎡)



서울시도시계획  
1995. 4. 24. 심사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도면

위 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내역	면 적(㎡)	비 고
마포구 성산동 590, 592일대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54,000	성산자동차 정비단지



성산자동차정비단지  
일반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54,000㎡)

서울시 도시계획  
1995. 11. 24  
심사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도면

위 치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내역	면 적(㎡)	용도지구 지정	비 고
강남구 청담동 47일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4,300	도시설계 지구	청담생활권 중심

일반주거지역 (43,300㎡) →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서울시고시 제 호  
1995. 11. 24  
심 사 제

공공의 청사

아파트지구

10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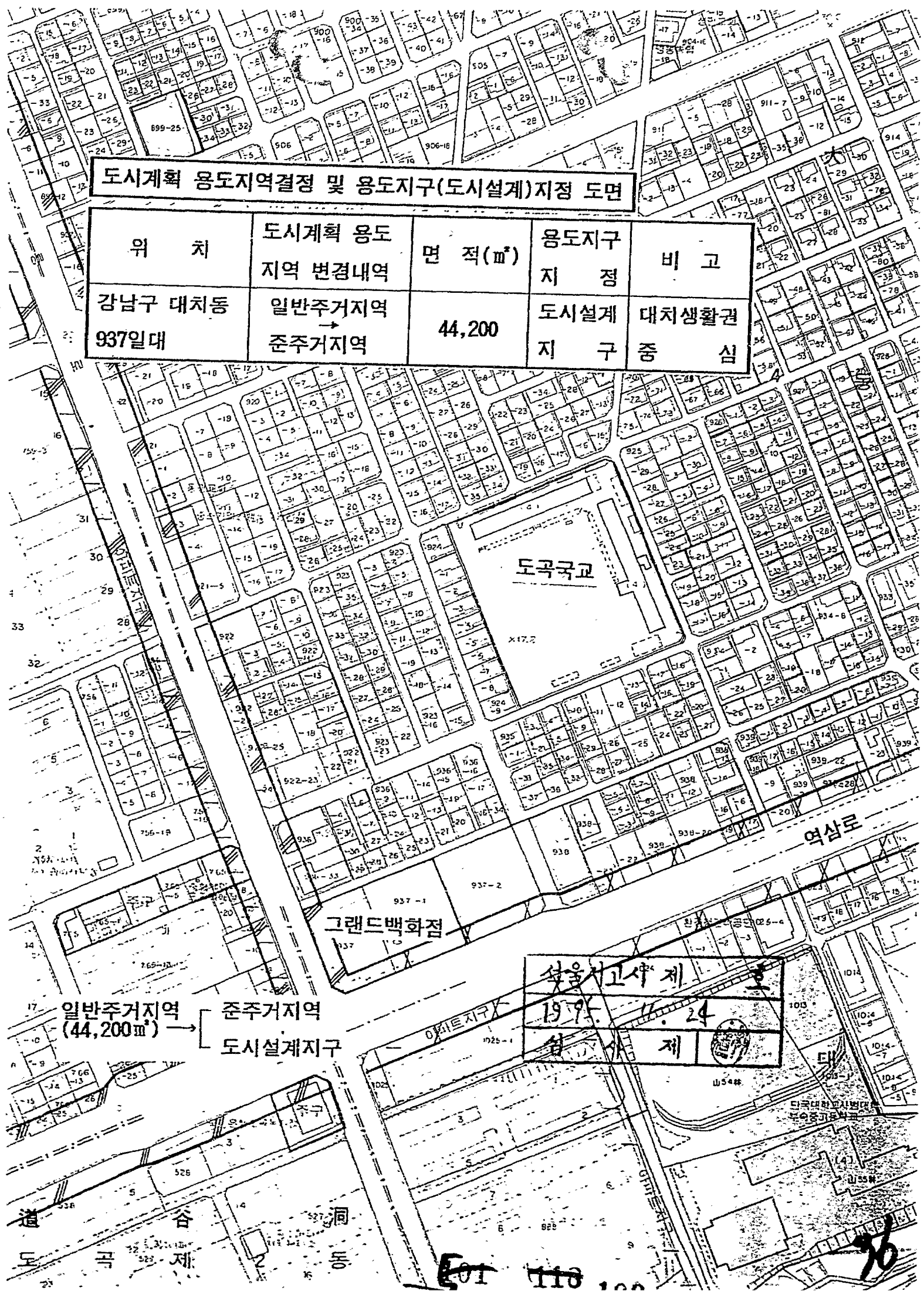
100

강남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도면

위 치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내역	면 적(㎡)	용도지구 지 정	비 고
강남구 대치동 937일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4,200	도시설계 지 구	대치생활권 중 심



일반주거지역 (44,200㎡) → 준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서울시고시 제 199. 11. 24  
설 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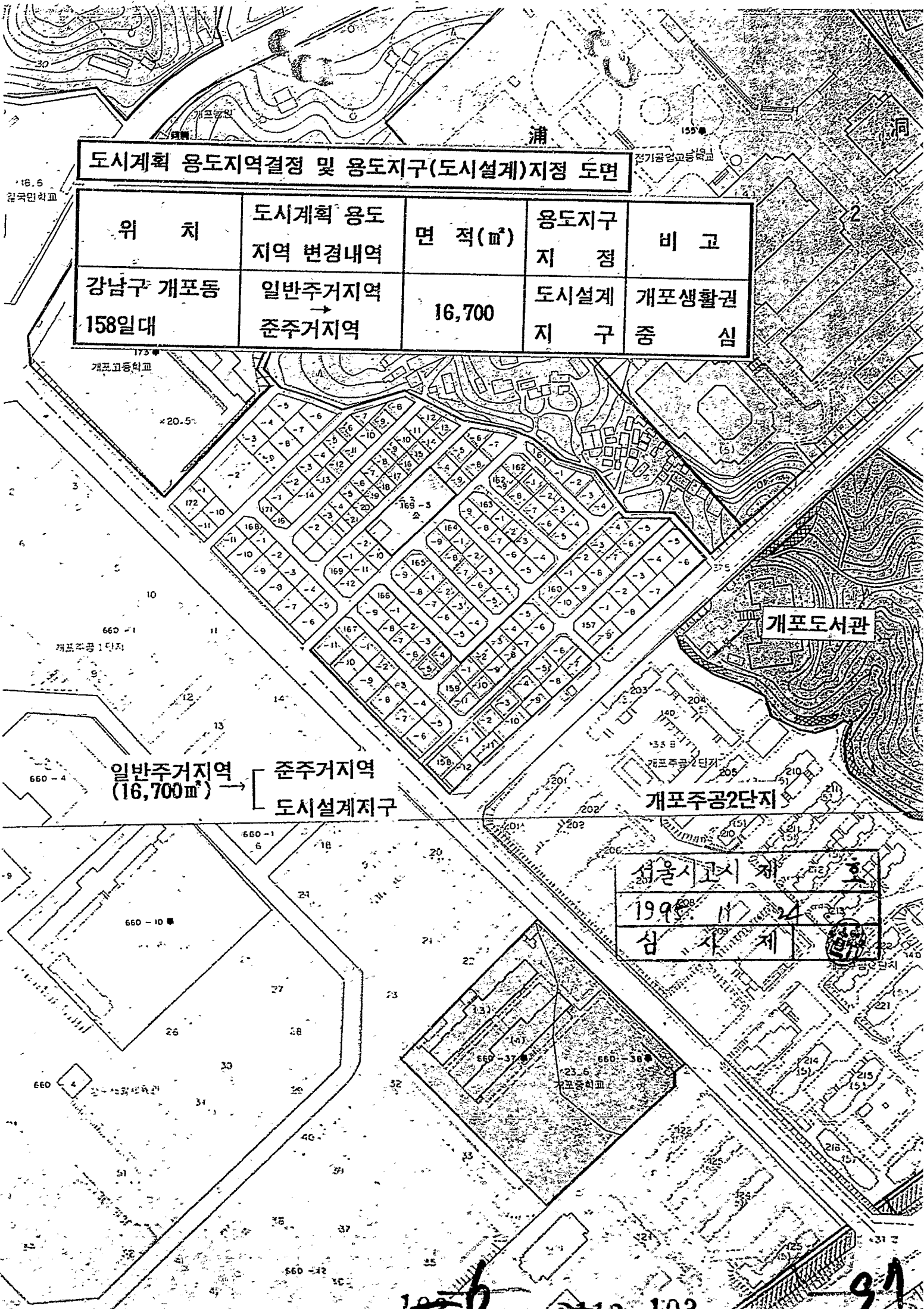
대치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김대중

101 110 100

76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지정 도면

위 치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내역	면 적(㎡)	용도지구 지 정	비 고
강남구 개포동 158일대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6,700	도시설계 지 구	개포생활권 중 심



서울시 도시계획  
1998. 11. 24  
심 사 제